

工業所有權審判事例

國(內)事(件)

實用新案登錄拒絕 定

<大法院 第2部 判決>(1983. 2. 22)

裁判長: 大法院判事 김 중 서

關與法官: // 강 우 영 · 이 정 우 · 신 정 철

1. 審判請求人(上告人): 김홍일의 1인
2. 被審判請求人(被上告人): 特許廳長
3. 原審決: 特許廳 1982.6.29字, 1981年 抗告審判(질)第123號 審決.
4. 主 文: 上告를 棄却한다. 上告訴訟費用은 審判請求人の 負擔으로 한다.

5. 理 由

審判請求人들 代理人의 上告理由를 判斷한다.

原審決 理由에 의하면, 原審은 舉示의 證據들에 의하여 1979.8.18 出願하여 拒絕査定된 이 事件 考案의 要旨는 “外廓 炭孔(2)은 通常의 炭孔과 갈게 穿孔하고, 中間炭孔(3)은 外廓 炭孔(2)보다 약간 크게 穿孔하여 그 상에 狹小孔(4)를 形成하고 中央에는 卍型 大孔을 穿孔하여 그 上下部에 狹小孔(5)(6)을 形成하고 中央에 保熱室(7)을 갖도록 構成하여서 된 구멍炭에 관한 것으로서 이 事件考案과 그 出願前에 公知된 (實用新案公報 第88號, 116~119面) 引用考案을 對比하여 보면 引用考案의 記載內容中에 炭孔을 下廣上狹으로 하되 階段角을 設置하여 火氣가 炭孔을 通過할 때 단각에 의하여 와

권작용을 일으켜 高熱을 發生케 하는 것과 이 事件 考案에서 炭孔의 上端에 狹小孔을 形成한 것과는 構造上으로 階段의 數만 다를뿐, 作用效果는 同一한 것이라서 兩者의 技術思想은 同一하다 할 것이고, 이 事件 考案에서는 引用考案과는 달리 中間에 卍型 大孔을 形成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이 事件 考案의 效果가 優秀함에 足한 資料도 없다고 說示한 다음, 이 事件 考案과 그 技術思想이 同一하고, 다만 構造上에 적은 差異는 있으나 그로 인한 별다른 作用效果는 認定되지 아니하므로 結局 이 事件 考案은 引用考案으로부터 극히 容易하게 考案할 수 있는 程度에 不適當하여, 이 事件 登錄出願을 拒絕한 査定을 維持하고 있는 바, 記錄에 비추어 살펴보면 原審의 위 認定判斷은 正當하고 거

기에 所論의 違法이 있다고는 認定되지 않는다. 論旨는 理由 없다.

그러므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訴訟費用은 敗訴者의 負擔으로 하여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注文과 같이 判決한다.

參 考

1981年 抗告審判(질)第123號

抗告審判請求人: 김홍일의 1인

被抗告審判請求人: 特許廳長

1979年 實用新案登錄出願 第4945號 拒絕査定不服抗告審判 請求事件은 實用新案法 附則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律 第2661號에 따라 審理하고 다음과 같이 審決한다.

注文: 本件 抗告審判請求는 成立할 수 없다.

두가지 引用例에서 容易하게 考案된다고 判斷한 事例

[東京高裁 1982. 9. 30 判決, 1980(行ケ)224號]

1. 事件概要

原告가 實用新案權者인 本件 考案은 꺼스라이터用 버어너노즐에 관한 것으로서 그림에 나타난 바와같이 노즐管1의 先端部에 이어서 耐熱鋼細線등의 소레노이드 코일을 裝置하는 構成을 要旨로 한다.

原告는 被告가 請求한 特許 廳의 無効審判에서 本件 考案의 實用新案登錄을 無効로 하는 要旨의 審決을 받은 것으로서 그 取消을 要求하여 出訴하고 審決에서 引用한 第1引用例의 파이롯트버어너는 火口로서 常時 一定量의 꺼스를 노즐에서 流出되어 繼續적으로 燃燒되고 있는 것으로서 꺼스라이터에서 소레노이드코일 2의 의하여 主流꺼스의 上方放出과 코일의 間隔3에서 流出하는 傍流 꺼스에 의해 混合氣에의 點火를 計劃한 本件 考案은 解決해야 할 技術의 課題를 달리하고 또한 第2 引用例의 꺼스라이터는 焰持續部材의 앞쪽에 吸氣孔과 混合室을 設置하여 여기서 꺼스와 空氣가 混合하고 있어 本件 考案은 이와같은 混合裝置

가 필요없이 꺼스와 空氣의 混合이 노즐管 1의 上端部에 붙은 코일 2의 間隔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2. 判決要旨

判決은 下記의 理由로서 原告의 請求를 棄却하였다.

即 本件考案은 노즐을 사용하는 라이터의 種類를 限定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레노이드코일을 노즐管의 先端部에 계속하여 裝置하므로써 補助의 으로 되고 있는지 主된 것인지는 아니면 꺼스와 空氣의 混合을 소레노이드코일 附近 즉 노즐 先端部 부근에서 이루어지는 꺼스라이터用 버어너노즐에 관계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解釋된다.

따라서 第1引用例에서도 노즐의 先端에 이어서 코일이 裝置되고 이 코일부근 즉 노즐 先端 부근에서 꺼스와 空氣의 混合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本件 考案과 第1引用例와는 이 點에서 어떤 다른 것이 없다.

또한 審決은 本件考案과 第1

引用例와의 相違點(焰持續部材의 構成)을 들어 그 相違點에서 第1引用例의 技術手段을 第2 引用例의 本件 考案과 相違하는 點에 비추어 本件 考案과 같이 構成하는 것은 當業者가 대단히 容易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라 判斷한 것으로서 그 判斷에 틀림은 없다.

3. 論 評

本件 考案은 判決中에서 言及한 바와같이 燃料室로부터 노즐 先端部에 이르기까지 꺼스와 空氣의 混合室을 갖지 않은 꺼스라이터에서 불꽃이 나는 缺點을 改善하는 考案이라고 생각되어지나 그렇다면 請求範圍가 이들의 特徵을 明示하도록 作成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